

[붙임1]

2022년 임산물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공고

산림청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는 임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「임산물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사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. 지원대상 :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제조·가공 및 수출업체

- * 우수농식품 패키지지원 샘플통관운송 및 농식품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-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지원 제외

2. 지원품목 :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

- * 임산물 HSK CODE 및 「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」 참조

3.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지원비율	○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관련 통관·운송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지원내용	○ 국제특송(EMS, DHL) 샘플발송비 지원 :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○ 시험수출(정식통관) 샘플송부비 지원 : 국내·외 내륙운송비, 수출신고필증 발급비, 현지 통관 비용, 항공(해상)운송비 등 ※ [2022년 임산물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정산기준] 참고 필수
지원한도	○ 연 100만원 / 1업체 *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선착순 지원
지원조건	○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-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/ ⑫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○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&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○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최대 4회 인정
필수 유의사항	○ 국제 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○ 개인·법인업체 동일 대표자일 경우, 대표자 관계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상 일원화 ○ 연말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제출 요청 시 사업 성과 제출 협조

4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`22.11.30. * 사업공고일 이전(`21.12월~사업공고일) 발송분 소급 지원

5. 신청방법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6. 지급절차 : 수출업체 신청(매월 말일까지) → 본사 검토 → 정산 지급(익월 10일 내)

7. 제출서류

구분	내용		비고
공통	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본 ③ 지원신청서 (엑셀파일 별첨) 및 개인정보 ④ 바이어 반응 테스트 (엑셀파일 별첨) ⑤ 수출신고필증 (⑩거래구분 92, ⑫결제방법 무상거래)		공통 제출 증빙 5건 모두 제출
추가 필수 증빙	국제 특송	① 인보이스 * EMS의 경우 운송장 ② 영수증	해당 항목 제출
	aT 수출지원 사업 최초 신청업체	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 (아래 중 택1 *붙임5 참고) (1) 사업자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제출(첨부파일로 방법확인) (2) 동의서,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)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무역통계진흥원으로 우편제출 요망	
	시험수출	① 항공: AWB, 해상: B/L ② 운송업체 대금청구서 - 인보이스, 세금계산서, 이체 확인증 등	

*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(직인 포함) 날인 후 업로드

※ (참고)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

- 관세사(관세사무소)를 통한 발급신청
- 관세청 수입 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 신청 : <http://portal.custom.go.kr>(T.1544-1285)
- EMS 이용 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 절차 진행

8. 기타 유의사항

- (정산협조) 정산 관련하여 aT 요구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
- (성과제출) 연말 수출성과 제출 관련하여 aT의 요청 시 제출 필수
- (중복수령 금지) aT 및 정부(지자체, 기타 공공기관) 지원사업 관련 중복 수령 적발 시 환수조치 및 해당 연도 참여 제한

9. 관련문의 : 농임산수출부(061-931-0826, 0829) imat@at.or.kr

2022. 3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